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6
----------	-----

발의연월일 : 2024년 9월 30일

발의자 : 강수진, 경수현, 김경이, 소형준,
양순임,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의 내용, 예방 교육(안 제4조 ~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 의무(안 제7조,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부서협의 : 여성가족과

라. 입법예고 : 2024. 10. 10. ~ 2024. 10.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책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톱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스톱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톱킹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안심장비 등 스톱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비 확충 및 지원 사업
3.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
4. 피해자등의 법률상담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스톱킹 예방 교육) ① 구청장은 스톱킹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경찰서 등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톱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톱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